

# 산학협력 정책 소개

2026. 3. 1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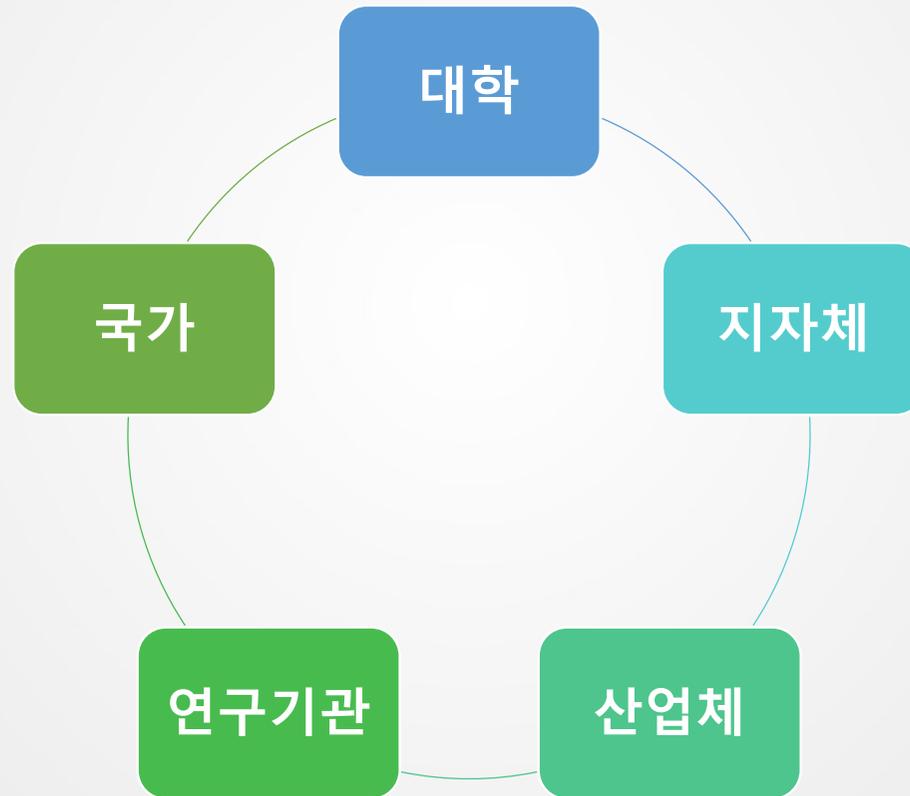


산학협력지원과

# 목 차

1. 산학연협력의 개념
2. 산학연협력정책 발전 과정
3. 산학연협력정책 주요내용
  -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중심으로
4. 주요 제도개선 내용
  - 산학협력법령 개정 내용 중심으로
5. 산학연협력 기반 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 개요

# 산학연협력의 주체



# 산학연협력의 목적

- 산업체 수요와 미래 산업발전에 따르는 **인력 양성**
- 새로운 **지식·기술**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**연구·개발·사업화**
- 산업체 등으로의 **기술이전**과 **산업자문** 등
- **인력, 시설장비, 연구개발정보** 등 유·무형의 **자원 공동 활용** 등

# 산학연협력의 필요성

- 지식기반의 **선진 국가경제체제** 구축을 위한 전략
- 글로벌 경쟁 속 **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** 및 시장변화 대응
- 현장 중심 경쟁력을 갖춘 **인재양성** 및 대학 **연구의 선순환** 기반 구축
- 창업, 사업화,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양질의 **일자리 창출**  
→ **국가경제의 발전 기반** 확보

# 산학연협력 정책 발전 과정

- (1960~1970년대) 실업계고등학교, 전문학교 중심의 산학협력
- (1970~1980년대) 정부출연연 중심의 산학연협력
- (1990년대) 대학 중심의 산학연협력 시작
- (2000년대)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학연협력 중요성 강조
  - 『산업진흥법』 → 『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』로 전부개정('03.9.)
  - 산학협력단 제도 도입('04), 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('08) 등
  - 법률 개정('17) → '19~'23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수립('18.10.)

## 제2차(2024~2028)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

- 비전(Vision):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산학연협력 추진
- 4대 전략
  1. 지역 특화산업 분야 인재양성
  2. 시장 중심의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
  3. 창업 활성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
  4. 지산학연협력 생태계 구축

# 제2차(2024~2028)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

## 전략1. 지역 특화산업 분야 인재양성

- RISE(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) 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
- 사내대학원 제도 도입
- 산업계 전문가를 대학 교원으로 활용
- (가칭)산업학위 도입으로 산업체 및 대학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박사급 연구원 양성 등

# 제2차(2024~2028)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

## 전략2. 시장 중심의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

- 대학 캠퍼스 내 대학-기업간 공동연구 기반 구축
-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 개선
  -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완화
  -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의 완화
-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 기준 마련

## 제2차(2024~2028)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

### 전략3. 창업 활성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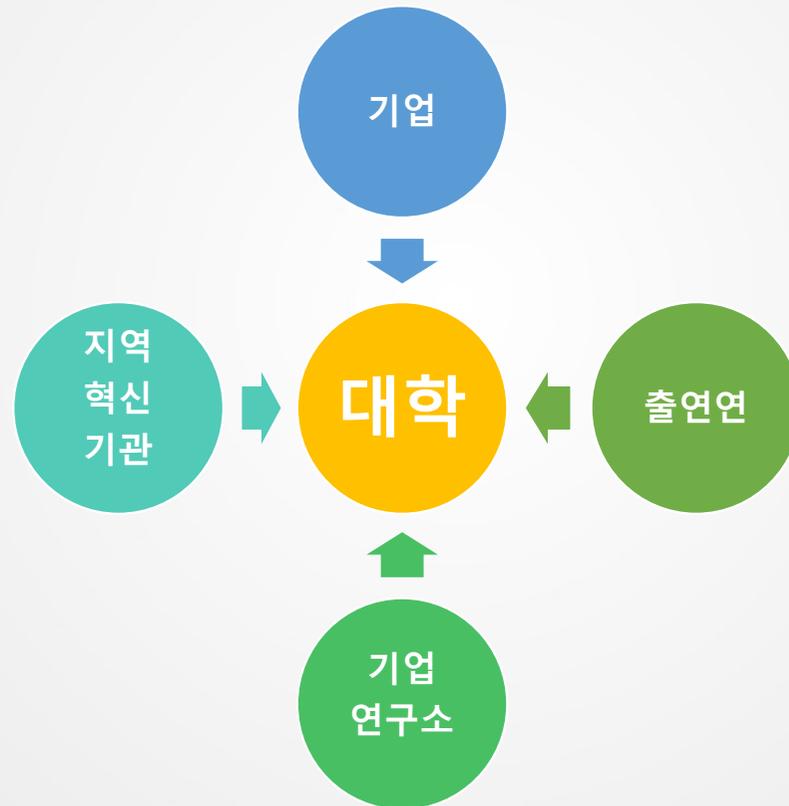
- 대학의 인적·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초·중·등 창업교육 프로그램
- 민간투자자 및 산업계 공동의 실전 창업교육 프로그램 기획·운영
- 지역 정주 창업기업 발굴·육성
- 대학 내 창업친화적 학사·인사 제도 활성화 등

# 제2차(2024~2028)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

## 전략4. 지산학연협력 생태계 구축

- 대학 캠퍼스를 혁신생태계로 조성
- 산학협력단의 역할 및 기능 강화
- 국가-지자체-대학-연구기관-산업계 협력체계 구축
- 산학연협력 정책 및 성과 정보제공 강화

# INBOUND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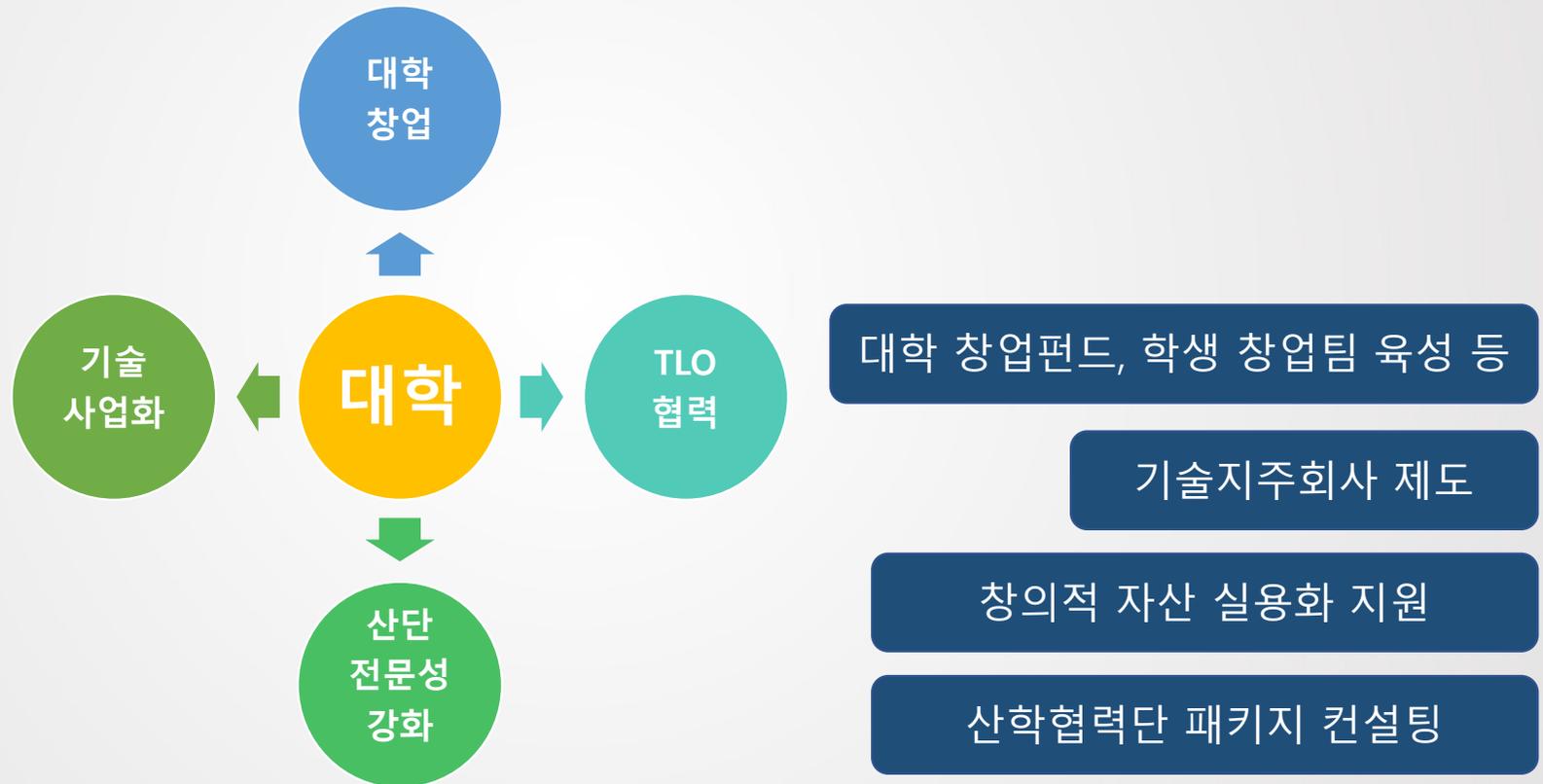


학연 벽 허물기

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

캠퍼스 혁신파크 조성

# OUTBOUND 전략



# 산학협력법 개정('24.12.)

-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근거 마련
- 산학협력단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비율 완화
  - (당초) 설립·운영 시 **30%** 초과 → **(개선)** 설립 시 **30%** 초과
-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완화
  - (당초) 설립·운영 시 **10%** 이상 → **(개선)** 설립 시 **10%** 이상
- 여러 대학이 공동 설립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상호명 결정에 대한 재량권 부여

# 산학협력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('25.6.)

-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(변경인가 절차 마련 등)
- 계약정원 운영 분야 확대
  - (당초) 첨단산업 분야 → **(개선)** 30 산업 분야
- 계약정원·학과 운영경비 규제 개선
  - 협력·하도급 업체 직원에 대한 계약정원·학과 운영경비를 대기업이 대신 부담 가능
-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범위 확대
  - (당초) 졸업학점의 1/5 → **(개선)** 졸업학점의 **1/4**

# 산학협력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('25.6.)

-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
  - (기술이전·중개) 다른 대학·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도 가능
  - (시설임대) 자회사 외에도 교원·학생 창업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 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도 가능
-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투명한 회계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

# 산학연협력 기반 조성 및 성과확산

- 법령상 제도 관리·운영

- 계약학과·계약정원
-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
- 산학협력 마일리지

- 정보제공

-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

- 성과확산

- 산학연협력 **EXPO**

# 산학협력 마일리지

- (목적) 산학협력 활동에 참여한 대학·기업 등에 인센티브 부여 → 적극적인 산학협력 활동 유도 및 산학협력 활성화 도모
- (내용) 산학협력 활동 실적\*에 따라 마일리지 제공

\* 대학생 현장실습, 산학협력 교육과정, 학생채용, 산업체 과제 수행, 기술이전, 공용장비 활용, 산학협력 장학금 등

→ **적립 마일리지 활용**: 정부·지자체 사업 지원 기업 가점,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(PC정비사, 신용상담사, 민간자격 재무빅데이터 분석사) 응시료 지원 등

감사합니다